

[사 건 명] 행심 2018 - 10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인천 ○○초등학교 학생으로 인천 ●●초등학교 ●●●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2017. 11. 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서면사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7. 11 3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8. 2.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을 학원에서 ‘원숭이’ 라고 2회 정도 부른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따라한 것 뿐이고, 이것은 단순 장난이고 고의성이 없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에도 화해정도를 2점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도 ●●●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분이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에게 ‘원숭이’ 라고 놀린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단순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느낄 정도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고,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수가 조정되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처분 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학원에서 ●●●에게 ‘원숭이’라고 2회 정도 말을 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2) 청구인이 ●●●을 학원에서 ‘원숭이’ 라고 2회 정도 부른 사실이 있지만, 이 것은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따라한 것 뿐이고, 이 것은 단순 장난이고 고의성이 없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숭이라고 부른 것이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부를 수도 있지만, ●●●의 입장에서는 ●●●이 ‘놀리지 말라’ 라고 하였고, ●●●이 친구들이 놀려서 힘들다고 ●●●의 부모에게 자주 말한 만큼, ●●●은 청구인의 행위를 모욕행위로 느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법상의 모욕에 해당하고 결국 학교폭력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재량권일탈, 남용여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에도 화해 정도를 2점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도 ●●●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양정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화해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위원회 진술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처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